

증권관련집단소송 판결 공고

아래 증권관련집단소송에 관하여 2020. 9. 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74313호로 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36조 제3항, 제4항, 제18조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의 주문과 이유의 요지 등 사항을 공고합니다.

1. 사건의 표시

-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74313 증권관련집단소송
- 원고(대표당사자) 김태웅 등 15인 및 그 외 원고들 10,236명
-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누리 담당변호사 김주영, 박필서, 구현주
- 피고: 지에스건설 주식회사
-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석범, 이상운, 김동욱
법무법인 맥 담당변호사 류노엘

2. 총원의 범위

피고가 제44기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2013. 3. 29. 17:15부터 잠정실적을 공시한 2013. 4. 10. 17:33까지 사이에 피고가 발행한 기명식 보통주식을 취득한 자로서 해당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2013. 4. 10. 17:33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

3. 판결의 주문

- 가. 원고(대표당사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나. 소송비용은 원고(대표당사자)들이 부담한다.

4.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대표당사자)들에게 43,777,824,1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10.부터 2019. 12. 3.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5. 판결의 이유의 요지

- 가. 원고(대표당사자)들은, 피고가 해외 플랜트 공사를 수주하여 진행하는 과정에서 대규모 해외 플랜트 공사들의 총계약원가를 처음부터 낮게 추정하거나 공사진행

정도에 따른 추정총계약원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매출과 영업이익 등을 과대계상함으로써 2012회계연도 제44기 사업보고서에 첨부된 재무제표 중 중요사항을 거짓으로 작성하였거나 중요사항의 기재를 누락하였으므로, 피고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162조에 따라 위 재무제표를 믿고 피고 발행주식을 취득하였다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의 당시 해외 플랜트 사업의 원가관리 상황, 2013. 3.경 대규모 해외 플랜트 사업장에 대한 원가점검 경위, 당시에 적용된 기업회계기준 등 회계처리 관련 규정, 2013. 4. 10.자 영업실적 등에 대한 전망 등에 반영된 해외 플랜트 사업에서의 손실 내용, 자본시장법의 규정 취지 등을 종합하면, 원고(대표당사자)들이 주장하는 사정들 및 원고(대표당사자)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2012회계연도 사업보고서에 첨부된 재무제표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대표당사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6. 유의 사항

가. 이 고지 후 주소가 변경된 구성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로 주소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주소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구성원에 대한 고지는 종전 주소로 하게 됩니다.

나. 위 증권관련집단소송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 중 구성원에게 개별 고지를 하지 않은 사항은 인터넷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의 『법원공고』란에 게시되므로, 위 공고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0. 9. 24.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 재판장 판사 홍기찬